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번호

446

2024. 6. 11.

복지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: 2024. 5. 31. / 손정자 의원 등 10명
- 나. 회부일자: 2024. 5. 31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24. 6. 11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여
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과 통일성 유지를 위한 제명 개정
 - (기존)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
 - (변경)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
- 용어 정비
 - 도시숲등 → 도시숲등의 (안 제4조제2항제9호, 안 제5조 제목, 안 제5조 제1항, 안 제5조제2항, 안 제5조제3항, 안 제5조제11항)
-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내용 정비 (안 제5조)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문 정비
 - 제6조제1항 법 제12조제2항 → 제6조제1항 법 제12조제3항
 - 제8조제1항 법 제12조제3항 → 제8조제1항 법 제12조제4항

- 「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」의 별표 5 →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시(안 제14조제1항)
- 비용부담 사항 정비
 -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조문 삭제(안 제7조제2항제1호, 제3호)
- 상위법 시행일을 반영한 부칙 시행일 규정
 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 -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남양주시 도시숲등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서용관)

- 본 안건은 상위법인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가로수를 옮겨 심고자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임
-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

4. 질의·답변요지: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: 없 음

6. 심사결과: 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: 없 음